

자주하는 질문

Q & A

목 차

1. 용어	3
2. 보상제도	
□ 공제급여의 종류	3
□ 물건 파손(안경, 휴대폰)	3
□ 학교안전사고 정의	3
□ 교육활동 인정 범위	4
□ 질병	4
□ 등·하교 사고	4
□ 교외활동 사고(현장학습, 운동경기)	4
□ 소멸시효	4
□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 교통사고	5
□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범위·한도	5
□ 교직원 사고	6
□ 수련원·스키캠프 등 위탁계약 관련 사고	6
3. 학교안전사고통지	7
4. 공제급여 청구	8
5. 공제급여 지급	9
6. 학교폭력 사고통지	10
7. 학교폭력 피해 지원	10
8. 공제급여관리 시스템	11

자주하는 질문 Q&A

□ 용어

- Q: 공제급여?
▶ A: 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Q: 공제가입자?
▶ A: 공제가입자는 학교장을 말합니다.
- Q: 피공제자?
▶ A: 피공제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자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합니다.
- Q: 청구인?
▶ A: 공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로서 통상 피해학생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 Q: 위임인, 대리인?
▶ A: 공제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받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해당 없음. 교사가 청구서 등을 대신 작성한다고 해서 대리인인 것은 아님.
- Q: 작성자?
▶ A: 해당문서(사고발생신고서 및 공제급여청구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

□ 보상제도

- Q: 공제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일반적인 병원 치료비용을 신청하는 '요양급여', 요양이 다 끝난 후에 장애가 남을 경우 신청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그리고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게시판-34번
- Q: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안경, 휴대폰 등 물건이 파손 된 경우 보상이 되나요?
▶ A: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피해 즉, 인적피해(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Q: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될 수 있는 사고는 어떠한 사고인가?
▶ A: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또는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 Q: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떠한 것들 인가요?
▶ A: 1.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에 학교 안·밖에서 행하는 활동
2. 학교장 인정 행사(대회) 참가 활동(내용)
3. 등·하교, 학교체류, 직업체험, 직장견학, 현장실습, 기숙사생활
4. 집합·해산장소와 거주지의 왕복시간 중의 활동(시간)
- Q: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무엇인가?
▶ A: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Q: 하교 후에 발생 한 사고도 인정이 되나요?
▶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하교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교 후 학교에서 머무르다가(통상적인 체류시간: 종례 후 1시간 이내)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Q: 등교 전에 발생 한 사고도 인정이 되나요?
▶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등교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과도하게 이른 시간에 등교하여 학교에 머무르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Q: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장소+시간+내용적 요건을 충족해야함) 예) 학교장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임의로 종례 후 1시간(통상 체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교에 머무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교육활동이 아니므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Q: 현장학습, 운동경기, 대회 참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이 되나요?
▶ A: 그렇습니다. 단, 현장학습, 운동경기, 대회 등을 가기 전에 인솔교사,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한 내부결재(학교장 결재)를 받고 활동을 한 경우에만 학교장 승인하의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활동과 관련된 숙박업소, 렌트카, 활동장소 등에 자체적인 차량종합보험, 숙박 건물 화재배상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활동을 진행바랍니다.
- Q: 소멸시효는 몇 년 인가요?
▶ A: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 Q: 수학여행 등을 가기 전에 학교에서 따로 여행자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나요?

▶ A: 학교장의 승인(인솔교사, 참석명단이 있는 교장전결 내부결재 서류)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나 여행의 경우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므로 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였어도 공제회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공제회에서 지급이 불가능한 항목(상급병실료, 비급여 주사료, 물리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학교에서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여행 시에는 국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기여행처럼 여행 특성상 학생들의 질병이 우려되는 여행일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별도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숙박·차량·계약 시, 해당 업체의 건물 배상·화재보험과 차량종합보험 가입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 Q: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학교안전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대신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예)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머리를 의자에 부딪힘,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발목이 꺾임.

※ 차량대질 시 차량종합보험 가입여부 및 별도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 Q: 요양급여(일반적인 치료비용)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병원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즉,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Q: 요양급여 지급(보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A: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 Q: 졸업하면 더 이상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보상금 지급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청구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A: 졸업 여부, 나이,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소멸시효(3년)가 도래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Q: 교직원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교직원의 경우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공제회 외에도 아래와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분들은 아래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아래 기관에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공제회에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립 교직원사고: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사립 교직원사고: 사학연금공단(1588-411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비정규직원 사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Q: 사설수련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수련원이 시설을 제공하고 수련원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련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 수련원 측에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련원에 위탁계약 한 경우) 수련원이 시설만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은 학교 측에서 실시하였다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원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수련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 Q: 스키캠프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스키캠프 업체와 계약형태가 스키캠프 측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도·감독 등 캠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스키캠프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캠프 측에 위탁계약 한 경우)

다만,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감독을 학교 측에서 하고 강습시간에만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형태로 계약한 경우라면 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통지

※ 사고통지 방법 및 절차: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게시판-36번

- Q: 「학교안전법」 상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회에 사고통지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후 언제까지 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해야하나요?
 - ▶ A: 통상적으로 사고발생 후 1주일 내에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사고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1주일 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된 사유를 사고등록 시 ‘기타사항’ 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사고통지가 불가능합니다.)
- Q: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비의도적인 가해자(사고관련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학생은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 ▶ A: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학생(이하 사고관련자) 정보를 ‘사고관련자’ 란에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사고관련자가 ‘일상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고등록 시 ‘기타사항’ 란에 기입해주시고 사고관련자 측에서 지불한 치료비용이 있는지 또한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공제회에서는 사고자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사고관련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고관련자 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 사고통지는 어떤 선생님이 해야 하나요?
 - ▶ A: 학교 내부적인 사항으로, 학교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 Q: ‘사고관련자’ 란에 관련 학생을 적으면 이로 인하여 사고학생이 나 사고관련자에게 피해가 가나요?
 - ▶ A: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사고경위와 정보 수집을 위하여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고관련자가 있는 경우 사고관련자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Q: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할 의도성이 없었는데 가해학생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피해학생을 지원해야하는 것인가요?
 - ▶ A: 사고관련자(다른 학생)의 보험으로 수해를 받았다면 공제회에서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사고관련자(다른 학생)의 보험회사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

○ Q: 청구 시 구비서류?

▶ A: 일반적인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 | | |
|------|---|
| 필수서류 | ① ★ 공제급여청구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후 학교 직인 날인 |
| | ②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불인정 |
| | ③ ★ 청구인 통장사본 |
| 추가서류 |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또는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 | ⑤ 진단서: ★치아 치료 시 필수★ 또는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
| |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

※ 학교 통장으로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납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게시판의 35번)

○ Q: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 A: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병원발급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약국발급
 보조기 등 구입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Q: 사고발생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나요?

▶ A: ‘사고발생일’ 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Q: 아직 치료를 마치지 않았는데 치료 중간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구분을 ‘중간’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Q: 청구 시 서류는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 A: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우편번호 55065)

○ Q: 청구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A: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안전법」 상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받은 날’ 로부터 3년입니다. (졸업을 했어도 성인이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도래된 경우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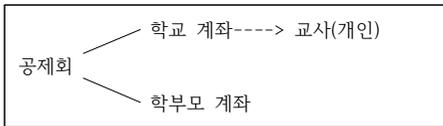
○ Q: 사고학생이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 졸업하거나 학년이 바뀌어 청구하는 경우 어떤 선생님이 청구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 A: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을 찾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님이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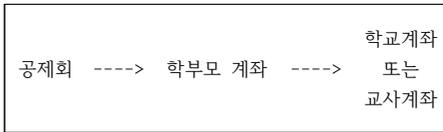
□ 공제급여 지급

- Q: 공제급여 청구를 하면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A: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완성된 청구서류가 공제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연장가능)
- Q: 학교 측이나 선생님이 사고학생의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학교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교사 개인 계좌로는 입금 불가)

방법 1:



방법 2:



※ 학교계좌로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통장과 함께 ‘대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게시판 참고)

□ 학교폭력 사고통지

- Q: 가해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학교장은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확인 후 반드시 기재하여야합니다.
- Q: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 A: 가·피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아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데 폭력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사고통지 해야 하나요?
▶ A: 자치위원회가 열린 후 일정기간 합의 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고통지 하면 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 지원

- Q: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범위	세부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2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 Q: 치료비용 전액을 지급하나요?, 치료비용 지급 기준은 어떤 것인가?
▶ A: 치료비용 전액이 지급 될 수도 있지만, 현재 학교폭력치료비용 지급 기준은 「학교안전법」상의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비급여 부분은 일부 또는 전부 공제하고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Q: 심리상담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심리상담비용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심리상담 센터 등의 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의 상담 비용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은 어디인가요?

▶ A: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63-228-5936
전주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063-272-2366
전주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3	063-224-8338
전주	하람심리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전주	씩심리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전주	조우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5-2	063-232-8425
전주	아이들케어상담치료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50	063-284-7300
익산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63-854-3004
익산	호남유지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 105동 102호	010-7343-9775
군산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 공제급여관리 시스템

○ Q: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 아이디’ 를 모르겠습니다.

▶ A: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여 학교명을 입력하시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창에서 해당 학교를 클릭하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학교아이디의 모든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 Q: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비밀번호’ 를 모르겠습니다.

▶ A: 초기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1234로 로그인 안 될 경우 학교안전 공제중앙회(070-7996-0149)로 문의하세요.

○ Q: 사고통지를 올렸는데 문서상태가 미통보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 A: 해당 건을 체크하시고 통보버튼을 눌러주셔야 공제회 전산으로 넘어 와서 담당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보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 Q: 사고통지를 올렸는데 문서상태가 미접수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 A: 아직 공제회 담당자가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통지 올라오는 건 수가 많아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순차적으로 접수해드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통상 3-4일 소요)

○ Q: 사고통지를 통보 후 내부결재 받은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A: 학교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고, 공제회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사고통지를 올렸는데 문서상태가 보완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 A: 해당 사고통지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으로 표시됩니다. ‘보완’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보완 사유가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고 수정버튼을 눌러 내용을 수정해주세요.(통보버튼은 누르지 않아도 됨)

○ Q: 공제급여청구서 상에 청구인과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 A: 청구인은 청구금액을 수령 받을 사람 즉, 통장 예금주와 일치해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학부모) 위임인, 대리인은 보통의 경우 비워두시면 됩니다.(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하는 경우에 기입)

○ Q: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진단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 A: 진단명을 모르는 경우 사고부위와 상태(발목 골절, 얼굴 찢어짐 등)를 기재하시거나 비워두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에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명을 기재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Q: 공제급여청구서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되나요?

▶ A: 아닙니다. 청구서등록 후 인쇄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출력하여 학교 직인 날인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공제회로 우편발송 해주세요.

○ Q: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시 영수증과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야하나요?

▶ A: 아닙니다. 우편발송 할 것이므로 첨부파일은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사고통지를 안했는데 청구서를 먼저 작성해도 되나요?

▶ A: 아닙니다. 반드시 사고통지부터 해주세요. 사고통지가 ‘접수’된 후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그 후 서류를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 Q: 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공제회에 보냈는데 ‘서류미도착’으로 나옵니다.

▶ A: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도착’ 상태로 바꾸는 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일주일내에 서류도착 상태로 바뀌지 않을 경우 공제회(063-272-0807)로 문의주세요.

○ Q: 사고통지 시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사고부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A: 부상정도가 가장 심한 부위를 선택해주세요.

○ Q: 학생이 쉬는 시간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통지서 작성 시 ‘사고당시활동’을 휴식으로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사고당시활동 즉, 사고가 발생한 그 순간에 사고자가 실제로 하고 있었던 활동을 선택해주세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 사고당시활동은 ‘보행/주행’입니다.